

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

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의3서식] <개정 2020. 10. 27.>
 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
제출인 (매수인)	성명(법인명) 홍길동(계약자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·외국인등록번호) 000000-0000000	
	주소(법인소재지) 등분상 주소 기재(도로명주소)	(휴대)전화번호 010-0000-0000	
① 자금 조달계획	② 금융기관 예금액 <small>본인 명의의 예금·적금 등 금융기관 예금 원</small>	③ 주식·채권 매각대금 <small>본인 명의의 주식, 채권, 유가증권 등 매각금 원</small>	
	④ 증여·상속 <small>가족 등에게 증여·상속 받아 조달하는 자금 원</small>	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<small>보유현금 또는 펀드/보험 등 금융상품 해지금 원</small>	
	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 ④번 해당사항 시 관계 체크 및 내용 기재	[] 보유 현금 은행에 예치하지 않은 현금 [] 그 밖의 자산(종류:) <small>예금(적금)이 아닌 금융상품 펀드/보험 해지 회수금 타인에게 빌려준 자금 등 회수금 ⑤번 해당사항 시 체크 및 괄호내용 기재</small>	
	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<small>본인소유부동산의 처분대금, 기존 보증금(전세) 회수, 재건축/재개발의 종전 부동산 관리가액 등 원</small>	⑦ 소계 ②+③+④+⑤+⑥ 자기자금 합계금액 원	
	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<small>우측 대출 금액의 합계금액 원</small>	주택담보대출 <small>분양권 중도금 대출 원</small> 신용대출 <small>신용 대출, 마이너스통장 등 대출금 원</small> 그 밖의 대출 <small>타부동산 담보대출 등 원</small> (대출 종류:)	
차입금 등 (빌린 자금)	기존 주택 보유 여부 (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만 기재) [] 미보유 [] 보유(건) <small>신용대출, 그밖에 대출 외 상기 주택담보대출로 차입금 조달을 하는 경우의 대상만 기재, 신고하려는 주택은 제외하며, 분양권, 입주권 등 권리상태의 주택 포함 및 부부공동명의 등 지분보유 경우에도 각 건별로 산정하여 기재</small>		
⑨ 임대보증금 <small>금회 취득하려는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보증금,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 원</small>	⑩ 회사지원금·사채 <small>금융기간 외 법인,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한 자금 회사지원금, 금융기간 외 대여금 등 원</small>		
⑪ 그 밖의 차입금 <small>가족에게 빌림/제3자에게 빌림 등 원</small>	⑫ 소계 ⑧+⑨+⑩+⑪ 차입금 합계금액 원		
[] 부부 [] 직계존비속(관계:) [] 그 밖의 관계() 차용인과의 관계			
⑬ 합계	⑦+⑫ 합계금액 (※당첨등호수분양가 + 발코니확장비 + 유상입선비용 총액과 일치해야함) 원		
⑭ 조달자금 지급방식	총 거래금액	⑬ 금액과 동일한 공급금액 원	
	⑮ 계좌이체 금액	⑬ 금액과 동일한 공급금액 원	
	⑯ 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	※ 해당사항 없음 원	
	⑰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	※ 해당사항 없음 원	
지급 사유 ()			
⑱ 입주 계획	[] 본인입주 주민등록상 세대원 같이 입주 [] 본인 외 가족입주 <small>주민등록상 분리된 가족 입주(예)분가 자녀 (입주 예정 시기: 23년 09월)</small>	[] 임대(전·월세) <small>입주하지 않고 임대</small>	[] 그 밖의 경우(재건축 등) <small>※ 해당사항 없음</small>
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나목, 같은 표 제3호가목 전단,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※날짜 작성금지 년 월 일

제출인 **홍길동**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1. 제출하신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되어,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.
2.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(첨부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첨부서류를 포함합니다)를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3. 이 서식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별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여부를 신고서 제출자 또는 신고 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 서류

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. 이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.

1.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: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2. 주식·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: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·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3. 증여·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: 증여·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: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5.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6.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7.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: 부동산 임대차계약서
8. 회사지원금·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: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작성방법

1. ① "자금조달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적고, 매수인이 다수인 경우 각 매수인별로 작성해야 하며, 각 매수인별 금액을 합산한 총 금액과 거래신고된 주택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.
2. ②~⑥에는 자기자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3. ② "금융기관 예금액"에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본인명의로의 예금(적금 등)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4. ③ "주식·채권 매각대금"에는 본인 명의 주식·채권 및 각종 유가증권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5. ④ "증여·상속"에는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 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년에 √ 표시를 하며,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6. ⑤ "현금 등 그 밖의 자금"에는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및 자기자금 중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본인 자산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(금융기관 예금액 외의 각종 금융상품 및 간접투자상품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포함)을 적고, 해당 자금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일 경우 "보유 현금"에 √ 표시를 하고, 현금이 아닌 경우 "그 밖의 자산"에 √ 표시를 하고 자산의 종류를 적습니다.
7. ⑥ "부동산 처분대금 등"에는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, 기존 임대보증금 회수 등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재건축, 재개발시 발생한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등을 적습니다.
8. ⑦ "소계"에는 ②~⑥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9. ⑧~⑩에는 자기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중복되지 않게 적습니다.
10. ⑧ "금융기관 대출액 합계"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 또는 매도인의 대출금 승계 자금을 적고, 주택담보대출·신용대출인 경우 각 해당 년에 대출액을 적으며, 그 밖의 대출인 경우 대출액 및 대출 종류를 적습니다. 또한 주택담보 대출액이 있는 경우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의 해당 년에 √ 표시를 합니다. 이 경우 기존 주택은 신고하려는 거래계약 대상인 주택은 제외하고,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주택을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며, "기존 주택 보유 여부" 중 "보유"에 √ 표시를 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 보유 수(지분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건별로 계산합니다)를 적습니다.
11. ⑨ "임대보증금"에는 취득 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 임대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적습니다.
12. ⑩ "회사지원금·사채"에는 금융기관 외의 법인, 개인사업자로부터 차입을 통해 조달하려는 자금을 적습니다.
13. ⑪ "그 밖의 차입금"에는 ⑧~⑩에 포함되지 않는 차입금 등을 적고, 자금을 제공한 자와의 관계를 해당 년에 √ 표시를 하고 부부 외의 경우 해당 관계를 적습니다.
14. ⑫에는 ⑧~⑩의 합계액을, ⑬에는 ⑦과 ⑫의 합계액을 적습니다.
15. ⑭ "조달자금 지급방식"에는 조달한 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방식 등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.
16. ⑮ "계좌이체 금액"에는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금액을 적습니다.
17. ⑯ "보증금·대출 승계 금액"에는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또는 대출금 승계 등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했거나 승계 예정인 자금의 금액을 적습니다.
18. ⑰ "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"에는 ⑮, ⑯ 외의 방식으로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을 적고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(수표) 등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습니다.
19. ⑱ "입주 계획"에는 해당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이후 첫 번째 입주자 기준(다세대, 다가구 등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중복하여 적습니다)으로 적으며, "본인입주"란 매수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함께 입주하는 경우를, "본인 외 가족입주"란 매수자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된 가족이 입주하는 경우를 말하며, 이 경우에는 입주 예정 시기 연월을 적습니다. 또한 재건축 추진 또는 멸실 후 신축 등 해당 주택에 입주 또는 임대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"그 밖의 경우"에 √ 표시를 합니다.